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12. . (제 회)	

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 3명(5급2, 6급1) 및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1명(5급1), 출연기관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신속 획득사업 추진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 기능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한시정원 4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혁신 4.0 추진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9급 1명)을 소속기관(9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 소속기관 인력(5급 4명, 8급 1명)을 방위사업청(5급 4명, 8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제26조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99”를 “404”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403”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9”를 “39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35”를 “728”로 하고, 일반직 계 “735”를 “7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7”을 “660”로 한다.

별표 3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등 그 소속기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 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 ----- ----- 2024년 12월 31일-----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 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 ----- ----- 2024년 12월 31일-----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99	404	+5
·	·	·	
·	·	·	
일반직 계	398	403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389	394	+5
·	·	·	

[별표 2]

방위사업청에 소속기관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5</u>	<u>728</u>	-7
일반직 계	<u>735</u>	<u>728</u>	-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67</u>	<u>660</u>	-7
·	·	·	

[별표 3]

방위사업청에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5조제4항 관련)

현 행 :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2022년 12월 31일)
개정안 :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2024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3